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526
- 발 의 자 : 이병도 의원 외 20명
- 발 의 일 : 2019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3일

## 2. 제안이유

- 청년기는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업, 취업, 생활 등에 따른 많은 부담감과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여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그동안 청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청년은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이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추가함  
(안 제6조제2항제2호자목 신설).
- 나.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2019. 4. 8. ~ 2019. 4. 15.)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방치되어왔던 청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청년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제2호),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의무를 부여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제2항).
- 서울시 청년기본계획은 2015년 11월에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 계획”으로 최초 수립되었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2019년 4월에 수립 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개요>

	설자리(7개사업)	일자리(6개사업)	살자리(6개사업)	놀자리(6개사업)
세 부 추 진 과 제	●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청년활력공간 운영 지원 강화
	● 희망두배 청년 통장	●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 사회주택 공급	●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창업정책실행방안 강화
	●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범위 확대	●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기회 확대	● 청년 매입임대 주택 공급	● 청년기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
	●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서울청년민회의 및 청년기바스 운영지원
	● 청년인생설계학교	● 이턴비트 청년권리보호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서울시 청년포털 구축
	● 청년예술지원사업 운영	● 취업날개서비스 운영	● 신용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인재풀 구축
	● 청년 미래투자금 지원			

가. 청년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 항목 추가(안 제6조제2항제2호자목 신설)

- 개정안(안 제6조제2항제2호자목 신설)은 5년 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청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li> <li>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li> <li>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li> <li>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li> <li>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li> <li>마. 청년의 부채 경감</li> <li>바. 청년의 생활안정</li> <li>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li> <li>아. 청년의 권리보호</li> </u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li> <li>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li> <li>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li> </ol>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li> <li>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li> <li>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li> <li>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li> <li>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li> <li>마. 청년의 부채 경감</li> <li>바. 청년의 생활안정</li> <li>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li> <li>아. 청년의 권리보호</li> <li><u>자. 청년의 건강증진</u></li> </ul> </li> </ol> <p><u>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li> <li>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li> <li>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li> </ol>

- 동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7개 분야(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의 부채 경감,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 자목에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청년 건강에 대한 적신호 위협<sup>1)</sup> 등 청년 건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의 건강증진”을 서울시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7개 시도의 청년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5년 마다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의 부채 경감,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으로 유사하며, 특히,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청년의 건강권 보장 내지는 건강 검진’ 등의 사항을 포함 하고 있음(참고 1 참조).
- ※ 부산광역시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건강 검진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청년 생활 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시행 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위태로운 청년건강은 비단 서울시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국가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건강

1) 취업난, 생존경쟁 속에 청년건강 ‘빨간 불’ 매일경제(2018.02.13.), 컵밥으로 한 끼 때우는 고달픈 청년들, 청춘이 아프다 오마이뉴스(2017.12.15.)

검진 대상이 확대되었고,<sup>2)</sup> 17개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sup>3)</sup>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 서울시에서 청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전액 시비가 아닌 국비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자목)에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동 규정이 없어도 관련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2) "2030대 청년들, 알고가자" 새롭게 바뀐 건강검진, 2030대 청년들 무료로 건강검진 가능·검진 항목부터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공감신문(2019.4.02.)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 청년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20~30대 직장가입자 중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만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했으나, 2019년부터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의 이번 국가건강검진 혜택 확대로 인해 약 720만 명의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청년층 정신·신체건강 사회서비스 청년이 제공한다. 중앙일보(2018.12.16.)

나. 청년 건강증진 방안 강구 등(안 제18조 신설)

- 안 제18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 안 제18조제2항은 시장에게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 개정안은 청년 기본 계획 중 청년 건강 증진 계획이 수립될 경우 당연히 시장에게 부여되는 책무이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선적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청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 align="center"><u>&lt;신설&gt;</u></p>	<p>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u>구축하여야 한다.</u></p>	<p>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u>구축할 수 있다.</u></p>

<p align="center">의사지원팀장 : 박희숙</p>
<p align="center">입법조사관 : 신정희</p>



연 번	지방자치 단체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 증진 실시	건강 사업 여부	2019년 청년 증진 예산액(백만원)
1	서울시	<p>「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u>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u> 가. <u>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u> 나. <u>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u> 다. <u>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u> 라. <u>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u> 마. <u>청년의 부채 경감</u> 바. <u>청년의 생활안정</u> 사. <u>청년 문화의 활성화</u> 아. <u>청년의 권리보호</u> 자. <u>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X	-
2	인천광역시	<p>「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u>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u> 가. <u>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u> 나. <u>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u> 다. <u>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u> 라. <u>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u> 마. <u>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 지원 및 부채 경감</u> 바. <u>청년의 생활안정</u> 사. <u>청년 문화의 활성화</u> 아. <u>청년의 권리보호</u> 자. <u>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X	-

3	경기도	<p align="center"><b>「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b></p>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b>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b>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b>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b>  <u>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u>  <u>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u>  <u>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u>  <u>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u>  <u>마. 청년의 생활안정</u>  <u>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u>  <u>사. 청년의 권리보호</u>  <u>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도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X	-
4	강원도	<p align="center"><b>「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b></p>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b>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b>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X	-
5	대구광역시	<p align="center"><b>「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b></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b>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b>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b>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b>  <u>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u>  <u>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u>  <u>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u>  <u>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u>  <u>마. 청년의 생활안정</u>  <u>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u>  <u>사. 청년의 권리보호</u>  <u>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X	-
6	부산광역시	<p align="center"><b>「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b></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b>5년마다 수립·</b></p>	X	-

		<p>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b>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b></p> <p><u>가. 사회·경제·문화 등 시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u></p> <p><u>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u></p> <p><u>다.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u></p> <p><u>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u></p> <p><u>마. 청년 생활안정</u></p> <p><u>바. 청년 권익향상</u></p> <p>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p> <p>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p>		
7	울산광역시	<p><b>「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b></p> <p>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b>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b>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b>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b></p> <p><u>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u></p> <p><u>나. 청년의 능력 개발</u></p> <p><u>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u></p> <p><u>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u></p> <p><u>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u></p> <p><u>바. 청년의 권리 보호</u></p> <p>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p> <p>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기본계획과 시의 주요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p>	X	-
8	경상남도	<p><b>「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b></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b>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b>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b>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b></p> <p><u>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u></p> <p><u>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u></p> <p><u>다.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안정</u></p> <p><u>라. 청년의 생활안정</u></p> <p><u>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u></p> <p><u>바. 청년의 권리보호</u></p> <p><u>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p> <p>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p> <p>4.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X	-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경상남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경상북도	<p>「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p> <p>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p> <p>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u>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u>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u></p> <p>3. <u>청년의 능력개발</u></p> <p>4. <u>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u></p> <p>5. <u>청년의 생활안정</u></p> <p>6. <u>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u></p> <p>7. <u>청년의 권리보호</u></p> <p>8. <u>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9. <u>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u></p> <p>10. <u>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u></p> <p>11. <u>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u></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X	-
10	전라남도	<p>「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u>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u>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u></p> <p>가. <u>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u></p> <p>나. <u>청년의 능력개발</u></p> <p>다. <u>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u></p> <p>라. <u>청년의 생활안정</u></p> <p>마. <u>청년문화의 활성화</u></p> <p>바. <u>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개정 2017. 6. 20.)</u></p> <p>3. <u>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u></p> <p>4. <u>전라남도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u></p> <p>5. <u>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u></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p>	X	-
11	전라북도	<p>「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p> <p>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p> <p>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 수립</u>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u>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u></p> <p>가. <u>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참여 확대</u></p> <p>나. <u>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등의 개발</u></p>	0	10백만원

		<p>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p> <p>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p> <p>마. 청년의 생활안정</p> <p>바.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p> <p>사. 청년의 건강권 보장</p> <p>아. 청년실태에 관한 조사</p> <p>자. 그 밖에 청년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p> <p>3.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p> <p>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p>		
12	광주광역시	<p>「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p> <p>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p> <p>나.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안정</p> <p>다. 청년건강검진의 지원 &lt;신설 2018. 3. 1.&gt;</p> <p>라. 청년 창업의 지원 [2018. 3. 1., 종전 다목에서 이동]</p> <p>마. 청년의 부채경감 지원 등 생활 안정 [2018. 3. 1., 종전 라목에서 이동]</p> <p>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2018. 3. 1., 종전 마목에서 이동]</p> <p>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2018. 3. 1., 종전 바목에서 이동]</p> <p>3.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p> <p>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0	-
13	충청남도	<p>「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p> <p>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p> <p>3. 추진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p> <p>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p> <p>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p>	x	-
14	충청북도	<p>「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x	-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p> <p><u>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u></p> <p><u>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u></p> <p><u>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u></p> <p><u>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u></p> <p><u>마. 청년문화의 활성화</u></p> <p><u>바. 청년의 권리보호</u></p> <p><u>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p> <p>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p> <p>4.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공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15	세종특별자치시	<p style="text-align: center;"><b>「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b></p>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u>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u>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u></p> <p><u>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u></p> <p><u>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u></p> <p><u>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u></p> <p><u>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u></p> <p><u>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u></p> <p><u>바. 청년의 권리보호</u></p> <p>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p> <p>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X	-
16	대전광역시	<p style="text-align: center;"><b>「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b></p> <p>제6조(기본계획)</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u>5년마다 수립</u>하여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u>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u></p> <p><u>가. 청년의 사회 참여</u></p> <p><u>나. 청년의 능력 개발</u></p> <p><u>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u></p> <p><u>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u></p> <p><u>마. 청년의 생활안정</u></p> <p><u>바. 청년의 건강권 보장</u></p> <p><u>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u></p>	O	-

		<p><b>아. 청년의 권리보호</b></p> <p>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p> <p>4.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p>		
17	제주특별자치도	<p style="text-align: center;"><b>「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b></p> <p>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b>5년마다 수립</b>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8. 2. 28.&gt;</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b>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b></p> <p><b>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b></p> <p><b>나. 청년의 능력 개발</b></p> <p><b>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b></p> <p><b>라. 청년의 생활안정</b></p> <p><b>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b></p> <p><b>바. 청년의 권리보호</b></p> <p><b>사. 청년의 교류확대</b></p> <p><b>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b></p> <p>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p> <p>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X	-